

2025년 한국교통안전공단 「기술임치 지원사업」 알림

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공정한 기술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‘기술임치 지원사업’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. 사업개요

- ☐ (사업명)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소기업 기술임치 지원사업
- ☐ (지원내용) 중소기업의 주요기술·정보 등을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 하도록 1년간의 임치비용 전액지원
- ☐ (임치대상) 기술상 정보 및 경영상 정보 일체 (별첨1)
- ☐ (운영기관)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- ☐ (임치비용) 신규계약(30만원), 갱신계약(15만원)에 대한 자부담금 전액지원

2. 지원계획

- ☐ (지원규모) 신규 및 갱신 총 30건 (단, 사업구조상 변경될 수 있음)
 - * 1개 기업당 1건의 기술임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신청기업 미달일 경우만 추가지원예정
- ☐ (지원대상) 공단 협력, 지역기업 포함한 **소** 중소기업
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※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기업
 - ※ 「국가계약법」 제27조 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기업
 - ※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및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- ☐ (지원기간) 임치 계약일로부터 1년간

3. 신청방법

□ (신청기간) 2025. 8. 25(월) ~ 2025. 9. 19(금) 18:00 [선착순 마감]

주: 1) 마감일 까지 온라인 신청과 이메일 서류 제출을 “모두” 완료해야 함
2)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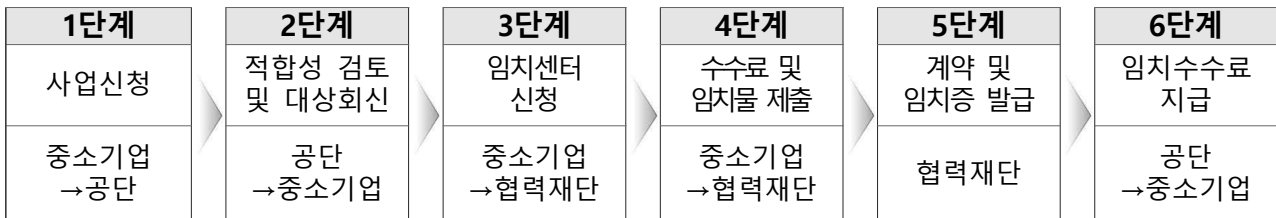
□ (신청방법) 상생누리 · 홈페이지 참조 후 관련서류 이메일 제출

-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(stable@kotsa.or.kr)

-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① 지원사업 신청서 | ② 중소기업확인서 |
|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| ④ 사업자등록증 |

- 신청기업 초과시 공단 내부검토 결과 후 선정 및 지원예정

○ (신청절차 세부안내)



4. 유의사항

□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시,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은 회수됨

- 지원결정 통보 후 기한 내 임치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
- 타기관의 해당기술에 대한 중복지원 등 지원필요성 상실한 경우

□ 신청서 작성시 추천부서 미기재시, 추천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불가

□ 초과모집될 경우 내부위원회를 통해 별도 기업선정 및 알림예정

* 최근 3개년 공단 동반성장 참여기업, 모빌리티기업, 지역기업 등 우선선발 예정

5. 문의처

□ 한국교통안전공단 ESG경영처 김석호 과장(☎054-459-7123)

별첨1

기술자료 임치지원사업 소개

□ 사업개요

- (기술임치)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,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(법적추정력)하는 제도

* 관련근거 :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

** 지정 임치기관 :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, 기술보증기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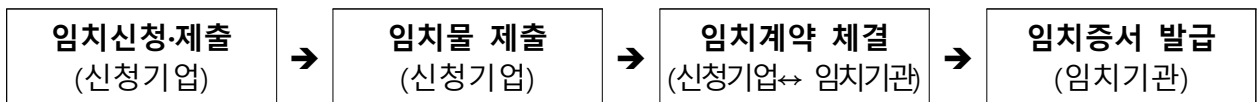
□ 이용대상

- (대상)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, 기관, 단체 또는 사업자
- (임치 대상물)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·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 정보 등

기술상 정보	경영상 정보
· 생산·제조 방법, 시설·제품설계도 등 · 물질 배합 비율·성분표 ·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· SW 소스코드·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	·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(재무, 회계, 인사, 마케팅, 노무, 생산) ·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(원가, 거래처,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)

□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연중 상시
- (신청방법) 임치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
- (이용절차) 임치물을 제출하고 소정의 계약절차를 통해 임치증서 발급



- (임치 수수료)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

구분	대·중소기업· 농어업협력재단	기술보증기금 (VAT 포함)	비 고
신규	300,000원/년	330,000원/년	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, 창업·벤처기업, 기술 혁신형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의 1/3 감면(신청일 기준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)
갱신	150,000원/년	165,000원/년	